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0.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노후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를 2009년 5월 매입하였으나 사적 제336호 선산 낙산리 고분군과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됨(문화재청).
-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로 변경 신청한 결과 허가되어 구미시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와 경상북도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를 교환하여 낙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낙산보건진료소 신축 변경 부지

- 토 지 : 1,088m²
- 기준가격 : 16,320천원(공시지가 기준)

【 처분재산 】

☐ 낙산보건진료소 신축 당초 부지

- 토 지 : 687m²
- 기준가격 : 8,931천원(공시지가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계				1	1,088	16,320	1	1,088	16,320
		토지 건물 기타				1	1,088	16,320	1	1,088	16,32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088	16,320	1	1,088	16,320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계				1	687	8,931	1	687	8,931
		토지 건물 기타				1	687	8,931	1	687	8,931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687	8,931	1	687	8,931

201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대상 수 량	추정가액	교 환 시 기	교환 사유	교환대상자	참 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처분	답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	687	687	8,931	2010년 하반기		경상북도	사유지
	계		1필지	687	687	8,931				
1	취득	답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	1,088	1,088	16,320	2010년 하반기	낙산보건 진료소 신축	구미시	도유지
	계		1필지	1,088	1,088	16,320				
계	토지	처분	답	1필지	687	687	8,931	2010년 하반기		
		취득	답	1필지	1,088	1,088	16,320	2010년 하반기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낙산보건 진료소 신축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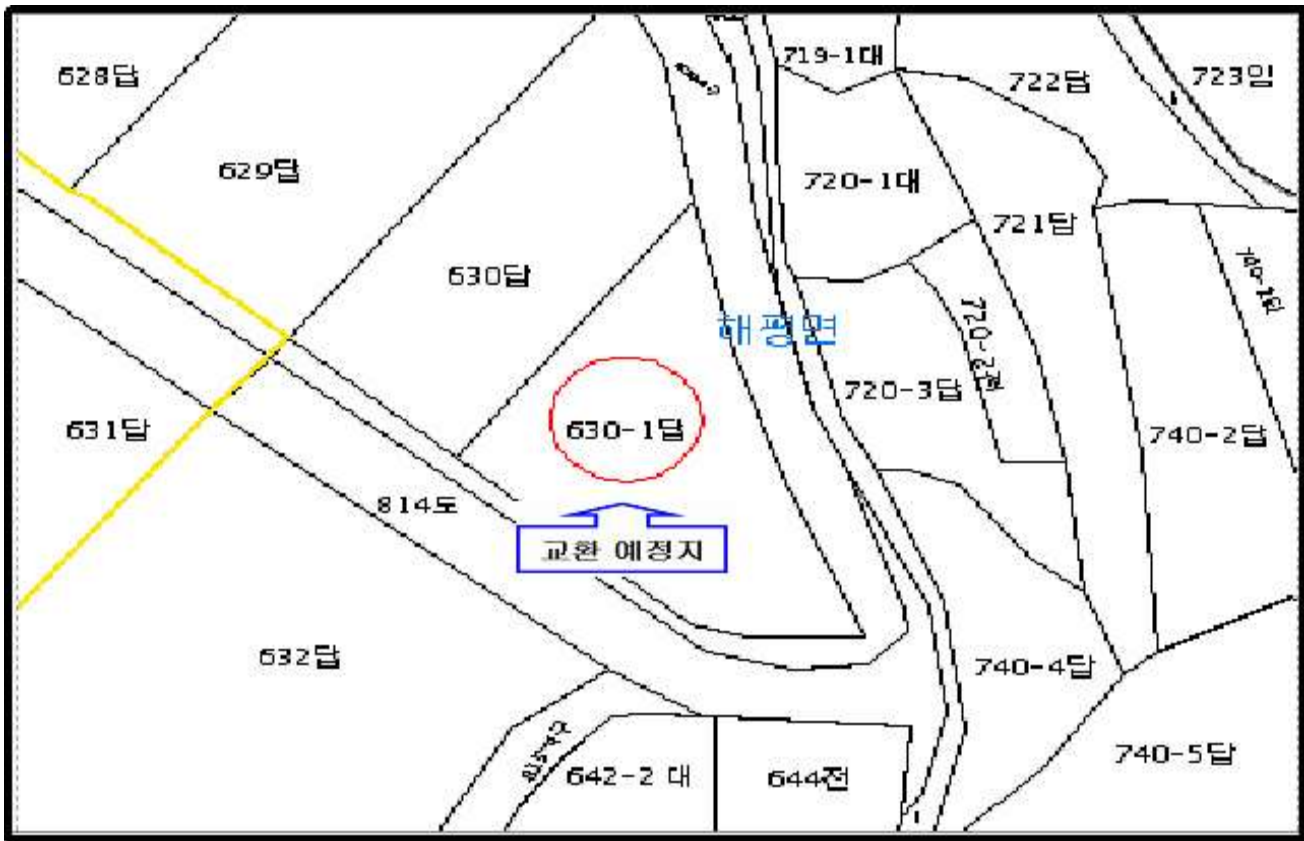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

○ 지목 및 면적 : 답(1,088㎡)

□ 위치도



□ 지적도



□ 현황 사진



처 분 대 상 토 지

□ 재산의 표시 : 낙산보건 진료소 당초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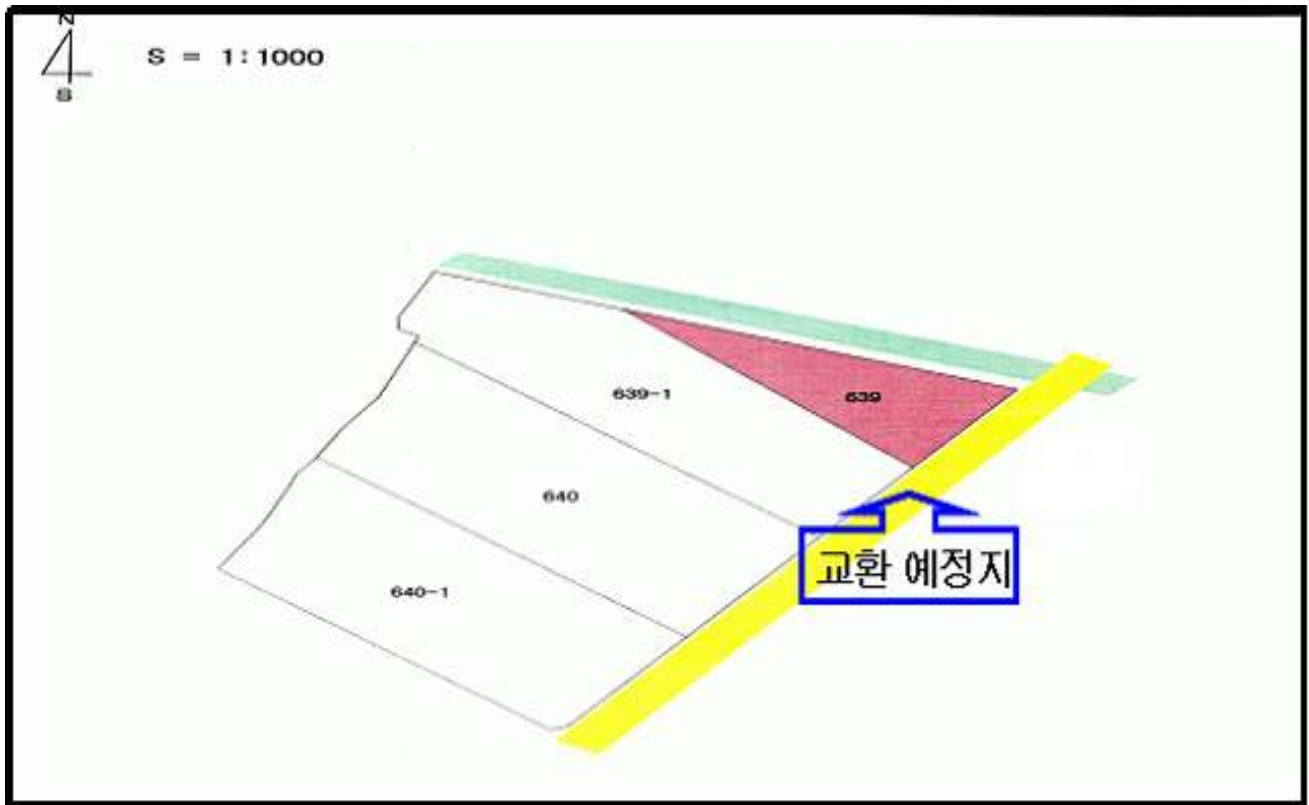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

○ 지목 및 면적 : 답(687m²)

□ 위치도



□ 지적도



□ 현황사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1. (생략)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사·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